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205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국민은행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◦「은행법」상 ‘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’으로 과태료 1,200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기 관

1.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

◦「은행법」 제34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

- ㈜국민은행(이하 ‘국민은행’)은 2024.11.12. 경찰의 수사협조의뢰 공문 등을 통해 전세대출 사기 혐의 등 금융사고 금액 13.8억원에

달하는 금융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동 금융사고를 인지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*,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* A지점 등 6개 지점은 2024.11.12. 상기 수사협조의뢰 공문 수신 등을 통해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甲부서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국민은행(甲부서)이 법령상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

※ 2025.4.14. 전세대출 사기 관련 경찰 보도자료 발표 이후,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본건을 2025.4.15. 사후적으로 금융사고 보고

나. 근거법규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「은행법」 제34조의3(금융사고의 예방) 제3항, 제69조(과태료) 제2항
○ 「은행법 시행령」 제20조의3(금융사고 예방대책 등) 제5항, 제3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[별표 4]
○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41조(금융사고) 제1항, 제5항
○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제67조(금융사고 보고) 제1항